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7890 판결 [물건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78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455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변론 종결2019. 9. 11.

판결 선고2019. 10. 1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455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각 "E"을 각 "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입급되지"를 "입금되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의 "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서'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제7행, 제9행, 제15행, 제6면 제10행의 각 "I"을 각 "F"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피고 L"을 "피고 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뒤에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3.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안

판사성원제

판사김지영